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1492
번 호	

제출일자 : 2017. 12. 1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「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」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- 나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군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감경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정 신설(안 제27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7. 11. 3. ~ 11. 23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생략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 ①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

1. 총 굴착비(추정비용을 말한다, 이하 같다)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: 100분의 50
2.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: 100분의 40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p>제27조의2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 ①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 굴착비(주정비용을 말한다, 이하 같다)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: 100분의 50 2.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: 100분의 40

「지하수법」 제14조

제14조(이행보증금의 예치)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
 2.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, 예치의 시기·방법·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2조

제22조(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) ① 법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9조의4제1항,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·이용에 관한 허가·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·유가증권 등으로 예치(預置)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,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
④ 법 제7조,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·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·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, 개발·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·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(이하 "원상복구 의무자"라 한다)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

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⑥ 삭제

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□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

제17조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1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·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
2.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

② 제1항에 따른 제거·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(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.